

|   |   |
|---|---|
| <p>(나) 공연장<br/> (다) 숙박업<br/> (라) 유기장, 오락장, 노래장<br/> (마)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 포함)<br/> (바) 차량판매정비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,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<br/> (사) 음식점<br/> (아) 학원(독서실·고시원포함,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<br/> (자) 사진현상소<br/> (차)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 제외)<br/> (카)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<br/> (타) 발전소<br/> (파) 이발소(미장원 제외)<br/> (하)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<br/> (거) 화훼, 식목업<br/> (너)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&lt;의료기관 제외&gt;), 오피스텔<br/> (더) 도살장, 정육점<br/> (러) 양조업, 제빙업, 제분업(방앗간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 제조업, 의약품·화공약품</p> | <p>품·화장품 제조업,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, 합성수지제조업, 페인트류제조업, 가구류제조업(자재가공 포함), 연료제조(고압가스제조 포함)<br/> (머)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, 식품제조 가공업, 피혁제조 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<br/> (버)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<br/> (서) 제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<br/> (어)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 초자제품 포함)<br/> (저)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적용,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)<br/> (쳐)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br/> (커)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 효율 적용)<br/> (터)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<br/> (퍼)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br/> (허) 가족탕업, 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br/> (고)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p> |
|---|---|

|   |   |
|---|---|
| <p>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·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8.12.<br/>도시관리위원회</p> <p>1. 경 과</p> <p>○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○제출일자 : 1998.11.11</p> <p>나.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</p> | <p>○회부일자 : 1998.11.17</p> <p>다. 상정일자</p> <p>○제16회 정기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('98.12.15) 상정, 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주택국장:양 갑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 삭제(안 제2조의2)</p> <p>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</p> <p>-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하는 토지</p> |
|---|---|

|   |   |
|---|---|
| <p>로서 해당공사 또는 공단의설치조례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대부→삭제</p> <p>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양재대)</p> <p>○본 개정조례안은 “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”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</p> <p>○체비지에 대하여</p> <p>-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,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, 수익, 대부 등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”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(1차회신)</p> <p>-재결의시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,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배제하고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제66조)에서 체비지 “관리”의 지방재정법 배제 명문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의 배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고(2차회신)</p> <p>-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가 공유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는 무상대부 허용기관이 아니므로 동조제2조의2 규정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</p> <p>○양기관 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일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이긴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토록 한 취지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은 차치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| <p>○생략</p> <p>5. 토론요지</p> <p>○생략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내용</p> <p>○소위원회 구성 없음.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○원안가결(만장일치)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○없음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·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·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의2를 삭제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7조제2항 중 “20인”을 “22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제2호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 3인”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3호 “종사자”를 “종사자 각 1인”으로 한다.</p> <p>부칙 제1조 중 “1999년 1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”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·장애인·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노인”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</li> </ol> |
|---|---|